

특허청, 민간 특허 조사·분석(IP-R&D) 활성화 위해 '산업재산권 진단기관' 목소리 듣는다

-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상 현장 불편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-

특허청은 2. 26.(월)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 강남구)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(이하 '진단기관') 대상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】

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·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*(現 269개)로,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·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** 받을 수 있다.

* 발명진흥법 제36조(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)

*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사목(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조사·분석비용)

간담회는 민간 특허 조사·분석(IP-R&D) 활성화를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 간담회에는 지난해 최우수 진단기관인 준성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 본, 우수 진단기관인 특허법인 다올과 (주)이룸리온전략컨설팅 등 진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.

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진단기관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▲ 「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」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▲ 진단기관 지정부담 간소화 ▲ 세액공제 확대 방안 ▲ 진단기관 역량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.

* 「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2024. 8. 7. 시행)

특허청은 지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로 ▲ 진단기관 활용 확대를 위한 '진단기관 제도 안내서' 제작·배포 ▲ 진단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▲ 외부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진단기관 시상 및 인증 현판 제공 등을 지원했다.

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민간 특허 조사·분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”이라며 “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표지 및 개요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	책임자	과 장	신원혜 (042-481-8254)
		담당자	주무관	구자훈 (042-481-5059)

Institutions for examin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

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안내



산업재산권진단 정의*

* 발명진흥법 제2조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산업재산권진단”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**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**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.

진단기관 주요 수행업무 범위*

*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

제19조(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)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
2.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
3.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

진단기관을 통한 특허 조사·분석 비용 세액공제*

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사목

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(제9조제1항 관련)

- 사. **중소기업**이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**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·분석**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

진단기관 현황

- '20년에 진단기관의 상세요건, 지정절차, 관리감독 규정이 마련*된 이래 민간 특허 조사·분석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 확대

* 「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('20.11.16) 및 개정('21.12.6)

- **진단기관 온라인 시스템*** 구축('22.3) 및 사용자 편의기능 개발('22~)

*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 <biz.kista.re.kr/ipams>

** 전문인력 등록 및 지정서 재교부 신청 등 각종 신청·승인 기능을 시스템화하여 관리

- 진단기관 지정 근거 '**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**'('24. 8. 7. 시행) 이관

* 「발명진흥법」 제36조, 제37조 → 「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